해외펀드 환차익 원천징수세액 환급금 지급 안내

저희 은행과 국세청 사이에 진행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(사건번호: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21621)이 종결되어 국세청으로부터 원천징수세금을 환급받음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해당고객들께 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리고자 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1. 소송의 배경 및 경과

- 가. 저희 은행이 과거 국내 투자자들에 해외펀드 수익증권을 판매한 후 판매사로서 투자자들의 환차익에 대해 관련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였는바, 일부 납부금의 경우 법리상 부당함을 이유로 과다 납부한 원천징수세금에 대해 은행권 공동으로 2012년에 국세청을 상대로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.
- 나. 소송의 주된 취지는 투자 대상 해외 주식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과 환차익이 발생한 경우 환차익만을 분리하여 소득금액에 포함시켜 과세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. 이 소송은 오랜 진행 끝에 법원으로부터 은행의 청구금액 원금을 인정하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으며, 2020년 12월 24일자로 종결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.
- 다. 이후 소송 종결로 인하여 2020년 12월 29일 국세청으로부터 과납된 원천징수세금 및 이에 대한 국세징수법 상 환급가산금 이자율에 의해 계산한 이자를 반환받았습니다. 반환받은 원천징수세금은 2007년 6월분~2009년 12월분 결산 및 환매로 납부된 원천징수세액 중 사무관리회사의 재계산을 통하여 과납으로 인정된 부분입니다.

2. 환급금 지급 절차

- 가. 고객별 지급금액: 고객별 2007년 6월분~2009년 12월 해당 펀드에 대한 결산 혹은 환매를 통해 원천징수가 발생한 세액 중 과납으로 인정된 금액 + 환급가산금 (*금액은 고객계좌별로 다릅니다.)
- 나. 지급 개시일자: 2021년 3월 2일부터
- 다. 지급 방법: 콜센터 전화 혹은 고객서비스센터 내방을 통해 본인확인 후 원하시는 본인 명의 타행계좌로 해당 금액을 입금하여 드립니다.
- 라. 문의 및 안내: 저희 은행 1층 고객서비스센터 및 콜센터(T.1544-3311)